

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 제1차 회의결과

1. 회의개요

□ 일 시 : ’06년 8월 16일(수), 14:00~16:00

□ 장 소 : 빈부격차·차별시정위원회 회의실 (알파빌딩 13층)

□ 참 석

○ 정 부

- 위원회 : 차별시정비서관 황덕순, 차별시정위원회 과장 남찬섭, 차별시정위원회 연구원 김소영 (3명)
- 부 처 : 노동부 고용평등국장 김태홍, 건교부 생활교통본부장 강영일, 국조실 복지여성심의관 류호영,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 이유훈, 법무부 구조지원과장 김경석(인권국장 대리), 복지부 장애인정책팀장 김강립, 재경부 복지경제과 사무관 장보현 (7명)
- 옵저버 :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팀장 정영선 (1명)

○ 장애계 :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김동범, 한국농아인협회 이사 신동진,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대외협력실장 김두현,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(준) 대표 박경석, 열린네트워크 대표 변경택,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사무국장 박옥순 (6명)

2. 회의결과

□ 논의내용

-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(이하 “장차법안”)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의견 (종합)
- 현재까지 정부 각 부처는 국회 계류 중인 장차법안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는 한 바 있으나 그에 대한 각 부처의 공식적인 의견은 정한 바 없음
- 다만, 국회 계류 중인 장차법안은 기존의 각 부처 소관 법령들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봄

○ 기획단의 기능 및 운영원칙

- 장애계

- 장차법 독립 입법을 전제로 기획단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
- 장차법에 대한 연구검토를 또 다시 한다는 것은 그간의 장애계 노력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
- 장추련은 장차법 독립입법이라는 확고한 목적이 있으므로 만일 이 모임의 성격이 연구모임이라면 장추련으로서는 이 모임에 참여할 이유가 없음
- 장차법 별도 입법을 전제로 논의하면서 그 과정에서 반대의견이 있는 부처가 있으면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기획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
- 기획단의 논의내용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장차법안을 기본토대로 하여 진행하였으면 함

- 정부

- 현재 정부로서는 장차법안뿐만이 아니라 인권위가 권고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장차법 별도 입법을 전제로 하여 기획단의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함
- 장차법 별도 입법에 관한 입장을 정하기 전에 장차법에 관련된 세부쟁점을 먼저 논의하여 각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
- 정부가 기획단에 재경부와 건교부 등 경제관련부처를 포함시킨 것은 경우에 따라 장차법 별도 입법으로 방향이 정해질 경우 장애계와 함께 장차법에 수반하는 경제적·사회적 효과 등도 미리 검토함으로써 정부입법안 성안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 때문임

○ 기획단의 명칭

- 장애계

- 명칭에 ‘연구’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
- ‘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’이라는 문구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

- 정부

-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단어가 있으므로 굳이 ‘제정’이라는 단어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봄
- ‘연구’라는 단어를 제외하는 대신 제정 등의 의미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 보이는 ‘기획’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

□ 합의내용

① 국회 계류 중인 장차법안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입장을 공유함

- 장차법안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공식입장은 현재까지 정해진 바 없음
- 다만, 정부 각 부처는 장차법안과 기존 관련 법령 간의 중복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음

② 기획단의 기본운영방식에 대해 합의함

- 기획단의 운영방식은 향후 2~3차례의 회의를 통해 장차법의 세부쟁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면서 장차법 독립입법 여부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기로 함
- 장차법의 세부쟁점에 대한 검토는 현행 장차법안을 중심으로 진행함

③ 회의진행방식에 대해 합의함

- 매 회의 개최 전에 차별위가 안건을 작성, 장애계와 부처에 전달하고 부처와 장애계는 사전에 내부회의를 거쳐 회의안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상태에서 회의에 임하고 회의에서는 참석자가 책임있는 발언을 하도록 함

※ 다음 회의를 위해서는 차별위가 장차법안의 세부쟁점을 정리, 부처와 장애계에 송부하여 부처의 입장을 미리 정리하도록 함

- 매 회의 때마다 회의 종결 직전에 당일 회의에서의 합의내용을 그 자리에서 정리하여 공표하고 이와 별도로 차별위는 매 회의 종료 후 논의내용과 합의내용을 별도 문건으로 정리하여 장애계와 부처에 송부, 의견을 묻고 이견이 없으면 이를 당일 회의결과로 확정하여 장애계와 부처에 재송부함
- 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중 회의결과로 확정된 합의내용만을 공개하며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개진된 의견 및 논의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. 다만, 합의내용을 설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논의내용은 해당 합의내용과 함께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

④ 기타 합의내용

- 본 회의체의 명칭에 대해 합의 :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
- 기획단의 구성에 대해 합의 : 기획단 구성은 별첨 참조
- 회의 진행주기에 대해 합의 : 기획단 회의는 매 2주 수요일에 개최

※ 기획단 제2차 회의는 '06년 8월 30일 (수) 오후 2시로 정함

□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 구성

